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76
----------	-------

발의연월일 : 2023. 5. 9.

발의자 : 최혜영 · 김원이 · 정성호

서영석 · 최종윤 · 김민철

서영교 · 용혜인 · 남인순

김종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의 도움이 있다면 원활하게 사회복지사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을 사회복지사 직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호).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피성년후견인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 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p> <p>1.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 견인</u></p> <p>2. ~ 5. (생 략)</p>	<p>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 유) ----- ----- -----.</p> <p>1. <u>피성년후견인</u></p> <p>2. ~ 5. (현행과 같음)</p>